

理事會 規程

2018. 7. 23.

SKC 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에스케이씨(SK)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 2 (경영철학의 실행)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의 기업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 ④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SK 기업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 실행하도록 한다.

제2장 회 의

제5조 (성립)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6조 (구분)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1. 각 이사가 부의한 사항으로서 소집권자가 긴급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2.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청구(별표 1)한 경우
 - 3. 기타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의 유고시에 의장대행자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
-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행순서에 의한다.

제9조 (소집청구)

- ①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청구(별표 1)한 경우 소집권자는 이를 거부 또는 보류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 소집요청 내지 청구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 (소집통지)

- ① 이사회 소집통지(별표 Ⅱ)는 회의개최일 1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전원에게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부의)

- ① 각 이사 및 업무집행임원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이사회사무국 담당이사나 업무집행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건 통보시에는 부의취지 및 관련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안설명)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설명은 그 의안을 제안한 이어나 업무집행임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 해당부서장 등이 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자 등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결 의

제14조 (결의방법)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결의권의 제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관하여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장 직 무

제16조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경영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 채택
- 2)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결정
- 3)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 4) 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수의 결정
- 5)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 6)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7) 공동대표이사의 업무분장
- 8) 이사의 직위 결정 및 업무분장
- 9)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제외)의
선임 및 해임

- 10) 이사, 주요주주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11)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승인
- 13) 상법 제397조에 따른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및 승인 없는 경업거래에 대한 개입권 행사
- 14) 이사의 경쟁업체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겸직의 승인
- 15)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승인
- 16) 이사에 대한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7)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 18)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 19)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20)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 2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22) 지점 및 사업장의 설치, 이전, 폐지
- 23)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 24)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제도의 도입
- 2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26) 이 규정 제4조의2에서 정한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체계의 정립 및 수정

2. 투자에 관한 사항

- 1) 회사 자기자본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 2) 회사 자기자본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3) 회사 자기자본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취득
- 4) 회사 자기자본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영업양수도
- 5) 위 1 내지 4 목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금액의 20% 이상 변동 (단, 변동금액이 회사 자기자본 1.5%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2) 중간배당
- 3) 자산재평가의 실시
- 4)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5) 신주의 발행
- 6) 종류주식의 배당률 및 존속기간
- 7)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8)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9)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 10) 사채의 발행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종류 및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 발행 위임 포함)
- 11)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2) 회사 자기자본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
- 13) 회사 자기자본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담보제공, 동 금액 이상의 자산 처분
- 14) 회사 자기자본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약 (1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과 회사 자기자본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 15) 주금 미납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6)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4. 기타

- 1)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2)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 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 4)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음

제17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본 규정에 의하여 위임·부여된 권한 하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
2.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의 시행 및 집행
3.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이외의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집행
4. 이사 및 업무집행임원에 대한 순차적인 권한의 재위임
5.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 1) 회사 중장기 To-Be Model 및 달성전략
- 2) 연간운영계획, 연간투자계획 및 그 주요부분의 변경
- 3) 분기별 전사 경영실적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보고

제18조 (사후승인)

- ①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담당이사 또는 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담당업무집행임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단, 집행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사후승인을 득한다.
- ② 제①항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대내적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 (사무의 처리)

- ①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을 둔다. 이사회 사무국장은 주관부서의 담당임원이 맡는다.
- ② 간사는 이사회 사무국장이 담당하며, 이사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원

중 1인을 보좌간사로 지명하여 간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록)

이사회 사무국장은 의사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 의사록(별표 III)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본점에 비치한다.

부 칙 (1986년 4월 1일)

제1조 ① 본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년 9월 1일)

제1조 본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 제20조의 서명은 199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부 칙 (1999년 5월 6일)

제1조 본 규정은 1999년 5월 6일부터 제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1년 4월 2일)

제1조 본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제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4년 11월 1일)

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제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5년 8월 30일)

제1조 본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제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7년 6월 29일)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제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4월 18일)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3월 23일)

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9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단,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3호 및 제17호,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3월 22일)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제10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3월 20일)

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제1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6년 8월 16일)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제1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2월 24일)

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제1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3월 24일)

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제1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3월 22일)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제1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7월 23일)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제1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 표 1 >

--

이사회소집청구서

1. 소집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회 의 장 소 :

3. 부의안건 및 사유

가. 제 목 :

나. 내용개요 :

다. 부의안건 : 별첨

20

청구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 ·

· ·

이사회회장 귀하

< 별표 II >

제 회 (정기 / 임시) 이사회소집통지서

1.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회의장소 :

3. 부의안건

가.

나.

다.

.
. .
. .

4. 보고사항

20

이사회 의장 성명 (인)

 이사
각 귀하
 감사위원

제 회 (정기/임시) 이사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회의장소 :
3. 출석이사 : 이사전원 명 중 명
4. 기타참석자 :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의안심의를 시작함.

제 1 의안 :

제 2 의안 :

.
.

의장은 상기 의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하고 : 폐회를 선언함.
이상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20 . . .

SKC 주식회사 이사회

의 장 대표이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
.

감사위원 (인)